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단506307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1. A

2. B

3. C

4. D

5. E

6. F

변론 종결2016. 1. 12.(피고 1. 2. 3. 5. 6.에 대하여)

2016. 4. 12.(피고 4.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6. 5. 3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9,331,821원과 그 중 49,123,325원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12%, 2015. 10.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 D, E, F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9,123,32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20%를 구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의 전세자금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 원고는 2010. 4. 2.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을 통하여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원금 47,700,000원, 보증기한 2012. 4. 9.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우리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4. 9. 변제기한을 2012. 4. 9.로 정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53,000,000원을 피고 A에게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 피고 A은 2011. 7. 1.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49,877,2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 그 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합계 753,875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이 49,123,325원이 되었고, 위 회수금액에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위 돈의 회수일까지의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산정된 지연손해금은 합계 208,496원이다.

나. 피고 B, C, D, E, F의 공동불법행위

○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A은 피고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G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차인 피고 A, 임대인 피고 D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피고 C가 작성한 주식회사 평화이담장례식장 명의로 발급된 재직관련 서류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 그러나 위 재직관련서류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고 A이 피고 F, B, 피고 C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 C로부터 허위 내용으로 작성받아 제출한 서류이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A에게 자신 소유의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피고 B의 제안을 승낙한 피고 D의 동의하에 피고 B이 작성하여 피고 F에게 교부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다.

○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A을 우리은행 잠실역 지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 A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건네 우리은행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 A도 위와 같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임차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은행을 기망하였다.

○ 우리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약정서에 기재한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대출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D: 다툼 없는 사실(피고 D에 대하여만),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C, E, F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9,331,821원(대위변제금 잔액 49,123,325원 + 확정 지연손해금 208,49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9,331,32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5%, 2012. 12. 1.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10. 5.까지는 위 연 12%, 2015. 10.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D, E, F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과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대위변제금 잔액 상당인 49,123,325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10.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과실상계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우리은행이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확인 여부 등에 대하여 소홀히 한 점, 자신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2,5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나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영득행위를 한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또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이 사건 대출 당시 우리은행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참작하여 그 손해를 감하여 달라는 주장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가담정도나 이득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차등을 둘 수도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문세